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99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9997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101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6가단1256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희

피고, 피상고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우경선

판결 선고2020. 10. 29.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1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 C 등이 대여금 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와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가 위 법률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여 말소 대상인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